

의안번호	제 205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육성사업의 추진·지원 근거 등 효율적인 드론산업의 육성·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드론산업 육성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시행(안 제4조)
-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안 제5조~제10조)
- 드론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업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 수탁자등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3조)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6. 비용추계서 : 불 입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 육성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드론산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드론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관련 현장 애로기술 및 신기반기술개발 지원
2. 드론 관련 시제품 및 신상품개발 등 상용화 지원
3. 드론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4. 드론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5.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및 기술 인력양성 지원
6.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 및 시험·인증사업
7. 드론 관련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관련 사업
8. 드론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9. 드론산업의 교육, 기술지도·보급 등 인프라 조성 및 운영
10.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2.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드론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드론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드론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7.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등에게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드론산업육성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드론산업육성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드론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충청북도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충청북도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 6월 30일 이후 처음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발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드론산업 육성체계를 수립하여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육성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조문을 신설 및 변경

2. 비용 발생 요인

- 드론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등 육성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4조(드론산업 육성계획 등 수립)
- 안 제12조(사업의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드론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나. 추계 결과

-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 100,000천원
- 드론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 1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0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000	-	-	-	-	100,000
드론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0
	세외수입	1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0